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노승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5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4일

발 의 자 : 노승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제리, 김춘례,
김태호, 문병훈, 박기열,
안광석, 오한아, 유정희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일재잔재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국어에 유입된 것으로, 우리 언어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」 제13조(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)에 ‘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.’는 원칙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어기본법」

「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」

「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3조(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